

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한철우

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부경위

이 조례안은 2014년 10월 2일 엄재창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10월 7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2. 제안이유

-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규정 마련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, 보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건축위원의 임명 및 위촉 관련 세부 규정, 중복 위원 배제 및 청렴서약서 제출 조항 신설 : 안제4조
- 건축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 : 안제5조
- 건축위원의 해임·해촉 규정 신설 : 안제6조
- 건축위원 연임 제한 근거 규정 마련 : 안제9조
- 건축위원회 회의 및 심의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: 안제11조, 안제12조
-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 : 안제14조

4. 검토의견

금번 개정조례안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규정 마련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주요내용은 안제4조에서는 건축위원의 임명 및 위촉관련에 대한 세부사항과 중복위원 배제 및 청렴서약서 제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, 안제5조와 안제6조에서는 건축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및 건축위원의 해임·위촉 조항을 신설하고, 안제9조에서는 건축위원의 연임제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음. 안제11조와 안제12조에서는 건축위원회 회의 및 심의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였으며, 안제14조에서는 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규정을 신설하였음.

금번 개정조례안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위임 근거 규정 마련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 : 충청북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